

#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과 지방재정

2016. 7.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이희재

# 목 차

I .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상황

II . 대응 정부정책(사회복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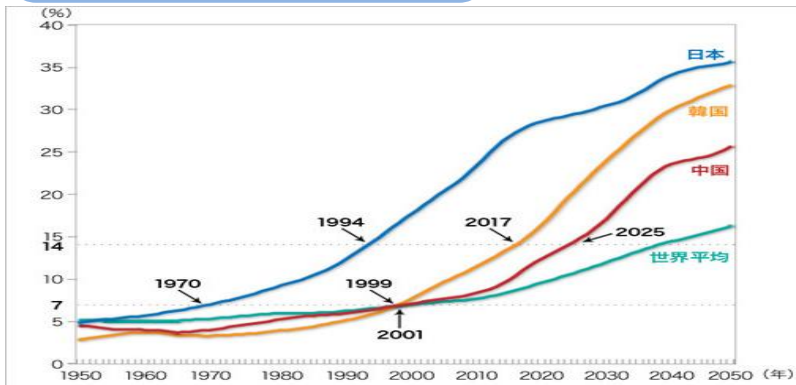
III . 지방재정예의 영향과 전망

# I.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상황

## ● 상황 및 특징

- 출산율: '71년(4.54명)→ '90년(1.70명)→ '10년(1.23명)→ '15년(1.24명)
- 고령화율: '70년(3.1%)→ '90년(5.1%)→ '10년(11.0%)→ '15년(13.1%)
  - \* 2000년(7.3%, 고령화사회)→ 2017년(14%초과, 고령사회)→ 2026년(20% 초과, 초고령사회)
  - \* 2040년 고령화율 32.3%로 세계 2위(일본 34.5%) 전망
-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17년, 일본 24년)  
(원인) 출생률 급속저하 및 기대수명 연장
-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은 한국 전체 고령화율의 약 3배

한, 일, 중 고령화 비율



# I.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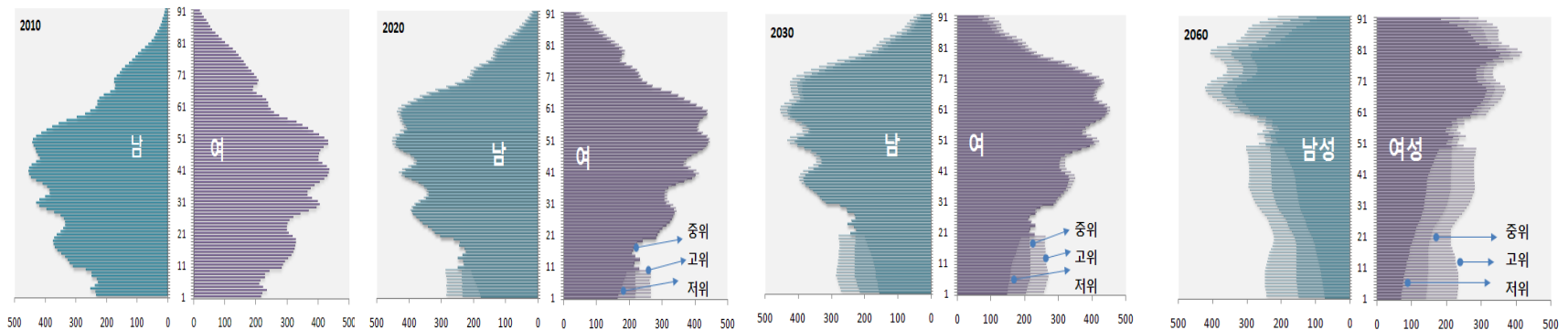
##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단위:천 명, %)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60
인구수	0~14세	13,709	12,951	10,974	9,911	7,975	6,788	6,575	4,473
	15~64세	17,540	23,717	29,701	33,702	35,983	36,563	32,893	21,865
	65세 이상	991	1,456	2,195	3,395	5,452	8,084	12,691	17,622
구성비	0~14세	42.5	34	25.6	21.1	<b>16.1</b>	<b>13.2</b>	<b>12.6</b>	<b>10.2</b>
	15~64세	54.4	62.2	69.3	71.7	<b>72.8</b>	<b>71.1</b>	<b>63.1</b>	<b>49.7</b>
	65세 이상	3.1	3.8	5.1	7.2	<b>11</b>	<b>15.7</b>	<b>24.3</b>	<b>40.1</b>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년-2060년), 2011

## 성 및 연령별 인구피라미드



주: 중위, 고위, 저위는 출산율 2010년 1.23명에서 각각 1.42명, 1.79명, 1.01명까지 상승(감소)후 지속을 기준으로 추계한 것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년-2060년), 2011.12

# I.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상황

## ● 저출산 원인

- 출산량의 감소(기혼여성들이 자녀를 적게 가짐)와 출산시기의 변화(가임기간 여성들의 미혼율 증가와 결혼연령 상승)
- 젊은이들이 결혼을 연기 혹은 포기함에 따른 출산의 기회 상실도 큰 원인임
  - \* 혼인 적령기의 남녀가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이유는 **결혼관의 변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근래 전반적으로 취업상황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결혼을 진행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 한국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4년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고령화미래위원회** 신설을 시작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및 홍보를 대대적으로 시행

- 그 결과 출산율은 2005년 1.08명을 저점으로 다소간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2009년 1.15명으로 여전히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최저수준임**

# I.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상황

##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한국의 인식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 - 만혼 및 비혼 등 결혼 기피

\* 평균 초혼 연령 크게 증가

- 1981년 남자는 26.4세, 여자는 23.2세

- 2008년에는 남자는 31.4세, 여자는 28.3세(남자는 5.0세, 여자는 5.1세 증가)

\* 미혼 인구를 대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 때문에, 교육 더 받고 싶어서, 자아 성취와 자아 개발 등 가치관이 54.9%

- 소득이 적어서, 결혼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실업이나 고용상태 불안 등 경제적 이유가 31.9%

### - 기혼부인의 출산 기피

\* 추가 자녀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소득이 적어서 등의 경제적 요인이 53.0%

계획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24.1% 등 가치관 관련 요인이 그 다음

## (참고 1) 한국의 저출산 원인(2003년 기준)

### - 첫째, 인구억제정책(가족계획사업)

- 60년대 : 알맞게 낳아 훌륭하게 키우자
- 70년대 :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80년대 : 둘도 많다, 하나로 만족하자

### - 둘째, 초혼 연령 상승과 출산 연령 상승

- 초혼(여자) : 1990년 24.8세 → 2003년 27.3세
- 첫째 아이 출산 연령(여자) : 1993년 27.6세 → 2003년 29.8세

### - 셋째,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 '03년 기준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48.9%(1970년 39.3%)  
취업여성 중 기혼여성 비율 75.3%(1978년 72.0%)  
\*가사노동 분담, 양육과 보육지원 없음 → 출산 기피

### - 넷째, 미혼율 증가와 결혼가치관 변화

- 미혼율 : 1970년 20~24세 57.2%, 25~29세 9.7% → 2000년 20~24세 89.1%, 25~29세 40.1%  
\* 원인: 교육별, 경제활동 참가, 자아성취 욕구, 결혼관 변화, 청년실업
- 미혼 남녀 결혼 가치관: 반드시 해야(21%), 하는 편이(47.8%),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27.5%),  
하지 않는 것이 좋다(3.4%), 생각해보지 않음(2.1)

\*결혼에 대해 우호적 입장이나 강도가 약해짐

## (참고 1) 한국의 저출산 원인

### - 다섯째, **자녀양육부담과 자녀관 변화**(출산율 저하 직접 원인)

- 가구소비의 56.6% 점유('03년 조사)

분석가구	가구소득	가구소비	자녀 양육비	소비대비 자녀 양육비 비율
4,524	285만원	233만원	132만원	56.6%

- 자녀관: 자녀 양육에 대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으로 자녀 갖는 것에 부정적 태도  
(미혼자) 자녀 양육 자신 없어, 자녀 없어도 상관없다 28.4%(여자)

자녀 양육 비용부담 때문에, 자녀 없어도 상관없다 6.7%(남녀 평균)

(기혼자) 15~44세 기혼 부인의 자녀 필요성 가치관

\* 반드시 가져야 함: 1991년 90.3% → 2003년 54.5%

### - **가족불안정성의 증가: 자녀 출산 망설임**

- 가족해체 원인 : 사망 60%, 이혼·별거·가출 40%(2003년)

- 조이혼율 : 1970년 0.4% → 2003년 3.5%

\* 조이혼률: 연간이혼건수/총인구(7월 1일 기준)\*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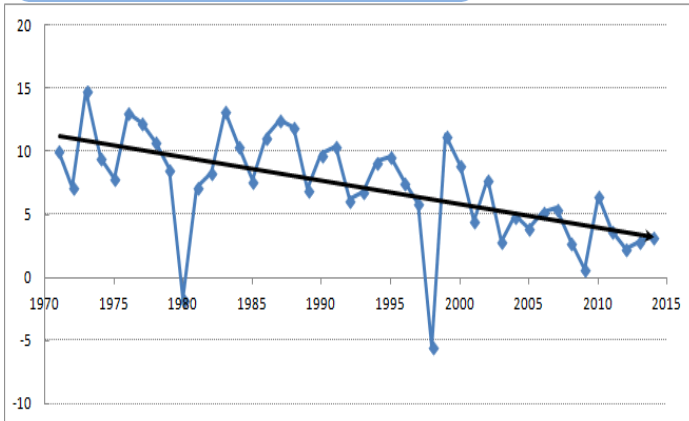


# I.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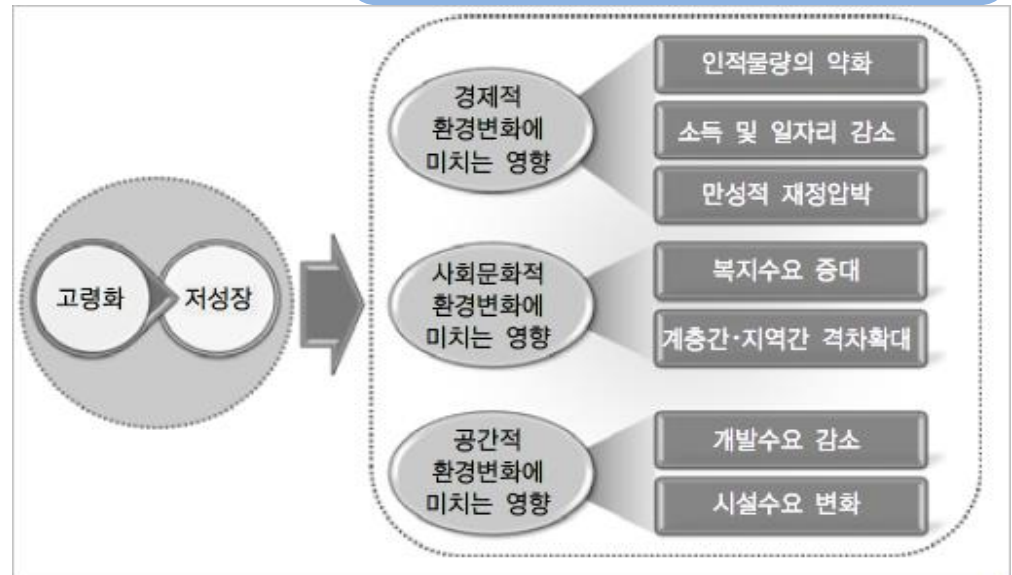
## ● 영향

- 잠재성장을 하락의 가속화 위험요인(KDI 예측): 2020-2030년 2% 성장 우려
  - \* 생산인구, 노동시장, 자본시장 등에 영향 → 저성장의 주원인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경제 영향(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 조세수입 감소 및 조세부담 증가
  - 만성적 재정압박과 각종 복지수요 증가
  - 자녀 양육 및 시설 수요 증대

경제성장을 추이



고령화가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



# I.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상황

## ● 지방자치단체 상황과 전망

- 고령화 비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수(2010년 기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고령화 사회(7%-14% 미만)	89개
고령 사회(14%-20% 미만)	34개
초고령 사회(20% 이상)	82개

- 지속가능 곤란단체 출현(2012년 기준,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 '지속가능곤란단체' 는 2012-2015년 사이 발생
- '지속가능위험단체' 는 2015년 이후 출현

구분	2012-2015년	2016-2020년
지속가능곤란단체(55세 이상 인구 50%)	9	25개
지속가능위험단체(65세 이상 인구 50%)	-	3개

주: 일본의 한계지자체 개념 준용(일본은 '준한계지자체', '한계지자체'로 정의)

## Ⅱ . 대응 정부정책(사회복지 정책)

### ● 5개년 계획으로 추진

-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09-'13, 1-3차)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
  -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으로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시행
  -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으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가중됨
  -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쟁점은 복지재원 문제, 중앙과 지방 갈등 발생

#### 여건

- 인구구조변동
- 경제사회불안
- 성장잠재력 저하
- 복지지출과 재정 한계

#### 주요정책

-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
- 일을 통한 자립지원 등
  - \* 여성경력단절 예방 등

## Ⅱ . 대응 정부정책(저출산 정책)

### ●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주요 사업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 목표: 아이 낳고 싶은 사회 만들기

#### 결혼, 출산 친화 사회시스템 확립

- 결혼하기 좋은 여건 확충
  - 청년고용활성화
  -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 강화
  - 결혼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출생 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임신출산 사회시스템 확립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지 강화
  -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여건 조성
-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돌봄
  -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부담경감
  - 맞춤형 보육 유아교육 강화
  - 돌봄 지원체계 강화
- 일/가정 양립 근로현장 정착
  - 일/가정 양립실천 분위기 확산
  - 남성 중소기업 등 실천여건 확충
  -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선

#### 생산인구 감소대비 인구경쟁력 강화

-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 여성경제활동 저해요인 해소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지원 강화
  - 고용 및 근무 형태의 다양화
-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동일직장 계속 고용 활성화
  - 중 고령자 재취업 창업지원 활성화
  - 고령기준 재정립
-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 해외우수인재유치 활성화
  - 취업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 다문화 사회대비 사회통합노력 강화
  - 총체적 외국인 유입관리체계 구축
- 인적자원 개발 강화
  - 일/학습 병행, 선 취업 후 진학 활성화
  - 성인/지역 친화적 대학시스템 개편
  - 평생학습체제 강화

## Ⅱ . 대응 정부정책(저출산 정책)

### ● 2016년 시행 계획(중앙정부)

#### - 결혼하기 좋은 환경

- 청년고용 활성화 - 강소, 중견기업 청년인턴 확대('16년 3만명)
-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확대 - 투룸형 공급('16년 1.6만호), 신혼부부 특화단지('20년 10개소)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지원(우대금리)

####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

- 임신, 추산의료비 지원 - 분만 전후 일정기간 1인실 입원료 50% 지원
- 공공형 산부인과 운영(370개소), 취약지 산모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70만원)
- 저소득층 영아 대상 기저귀(월 64천원), 분유(월 86천원) 지원

#### - 맞춤형 보육, 돌봄 강화

-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 → 종일반, 맞춤형, 시간연장, 시간제 보육반으로 다양화('16.7월 시행)
-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150개소, 공공형 150개소, 직장 80개소 확대
  - \* 어린이집 아동 비율 '15년 28%에서 '16년 30%,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15억원 지원
- 초등돌봄교실 확대: 1-2학년 대상 수용 규모 확대, 특기적성프로그램, 대학생 등 교육기부 활용
- 교육개혁: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미 '14년에 1학년 대상부터 시행 중)

#### - 일/가정 양립 실천 강화

- 출산전후 휴가(90일), 육아휴직(6세 미만 유아 위해 부, 모 각각 1년 미만 휴직, 통상임금의 40% 지급)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정부, 언론 합동 결혼, 출산 장려 공익광고 등

## Ⅱ . 대응 정부정책(저출산 정책)

### ● 2016년 시행 계획(지방자치단체)

- 서울: 시민청 결혼식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다자녀가구 장기임대, 전세주택 우선 공급 등
- 부산: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 조성 등
- 대구: 어린이안심보험 지원, 기형아 검사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 인천: 의료서비스 지원, 장난감 무료 대여점 운영
- 광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청년 창업 특례 보증
- 대전: 둘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미혼 남녀 맞선프로젝트 운영
- 울산: 임신부 건강검진, 유아용품 대여
- 세종: 임신부 할인혜택 지원
- 충북: 출산장려금(둘째 아이 120만원, 셋째 아이 이상 240만원), 결식 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 충남: 난임 부부 한방치료 사업
- 전북: 취약지역 임신부 이송 지원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경북: 출산장려금, 결혼자금 저리융자 지원
- 경남: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 제주: 둘째 아이 이후 양육수당 및 출산장려금 지원 \* 이외 시,군,구별로 출산장려금 등 사업 시행

## Ⅱ . 대응 정부정책(저출산 정책)

### ● 저출산 대응 중앙정부 사업 예산(81개 과제, 21.42조원)

- 청년일자리 및 주거대책 강화: 20개 과제, 3.64조원
-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32개 과제, 1.18조원
-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개혁: 17개 과제, 15.85조원
-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의12개 과제, 0.76조원

\* 고령사회: 98개 과제, 13.82 조원,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반 강화 10개 과제 110억원

\* 저출산 대응 추진사업 예산: '15년 20.2조원 → '16년 21.42조원

### ● 저출산 대응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예산

- '15년 2.66조원 → '16년 2.78조원

\* '16년 고령사회 대응 1.19조원,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반 강화 474억원

## (참고 2) 보육기관(어린이집) 운영 개요(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 안내)

### ● 어린이집 설치 주체 및 보조금

- 국공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
- 법인, 단체: 각종 법인(학교법인, 근로복지공단, 교육훈련시설, 보건복지부장관 지정)이 설치, 운영
- 직장: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설치, 운영(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
- 가정: 개인이 가정 등에 설치, 운영
- 부모협동: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들이 조합 결성 설치, 운영
- 민간: 그 외

### 1)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영유아(국고보조율 서울 35%, 지방 65%)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영유아 1인당 지원액, 원)		
		종일	야간	24시
100%	만0세	418,000	418,000	627,000
	만1세	368,000	368,000	552,000
	만2세	304,000	304,000	456,000
	만3세	220,000	220,000	330,000
	만4세	220,000	220,000	330,000
	만5세	220,000	220,000	330,000

\* 장애아 보육료: 438,000원, 시간연장 보육료(일반 180,000원, 장애 240,000원)

\*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0세 383,000원, 1세 185,000원, 2세 121,000원, 장애 402,000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수당 지원: 연령, 농어촌, 장애 등 고려 100천원-200천원



## (참고 2) 보육기관(어린이집) 운영 개요

### 2) 교직원 인건비: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국고 50%, 시도 25%, 시군구 25%)

- 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 지원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액 대비 80%(유아반 교사 30%, 방과후 교사 50%) 지원
  - \* 예, 보육교사(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등 포함) 10호봉 2,118,490원
- 민간 등의 어린이집 중 장애아통합교사, 시간연장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80% 지원
- 시간 연장형(시간연장보육 교사 별도 채용한 경우 해당)은 인건비 80% 지원
  - \*정부 미지원시설(민간 등)은 1인당 123.6만원 지원

### 3) 어린이집 기능 보강(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구입 등): 국고 50%, 지방 50%

### 4)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시설비(국고 70%, 지방 30%), 운영비(국고 100%)

### 5)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가정, 민간어린이집 포함)

- 운영비(보육교직원 자기개발, 교통비, 교재/교구비, 프로그램개발비, 냉난방비 등)
- 차량운영비(농어촌 소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조교사비 등

## (참고 2) 보육기관(어린이집) 운영 개요

### ● 어린이집 수 추이 및 대기 아동수 추이

(단위:개, 명)

		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2000	어린이집수	19,276	1,295	2,010	324	8,970	6,473	-	204
	보육아동수	686,000	99,666	157,993	15,949	336,625	67,960		7,807
	대기아동수	-							
2005	어린이집수	28,367	1,473	1,495	979	12,769	11,346	42	263
	보육아동수	989,390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933	12,985
	대기아동수	-							
2010	어린이집수	38,021	2,034	1,468	888	13,789	19,367	74	401
	보육아동수	1,279,9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1,898	21,901
	대기아동수	-							
2013	어린이집수	43,770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보육아동수	1,486,980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대기아동수	-							
2015	어린이집수	42,517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보육아동수	1,452,813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대기아동수	-							

\* 2014년 6월 대기 아동수 : 419,098명(23.7%, 이용자수 1,352,022명)

## (참고 2) 보육기관(어린이집) 운영 개요

### ● 입소절차

- 입소 우선순위
  -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부모 모두 취업 등
  - 2순위: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형제자매 등
- 입소자 결정
  - 신청 순서에 따라 신청자 명부 작성 → 열람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어린이집 원장) → 입소전 7일전까지 증빙
    - \* 시간 내 증빙서류 제출 못하면 입소대기자 취소
  - 점수 산정하여 입소순위 결정(1순위 항목 100점, 2순위 항목 50점)
  -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준수(결원시 대기 순위로 입소)
    - \* 입소우선순위 미준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 \*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하고 입소우선순위 준수해야 함
-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편성
  - 지자체는 신학기 원아 모집 실시하고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입소예정자 확정토록 권장
  - 가능한 한 반편성은 0-1세, 2세, 3세 이상, 장애아로 편성

## (참고 2) 보육기관(어린이집) 운영 개요

### ● 보육료 산정

#### - 보육료 수납액 결정권자

- 시도지사가 어린이집 유형 및 여건 고려하여 보육료 수납한도액 매년 1월까지 결정, 시달
- \* 수납 한도액 결정 즉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

#### - 수납한도액 결정 원칙

-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지원 않는 어린이집 중 영아반(0-2세): 정부 보육료 범위 내
- 장애아보육료 : 정부지원 단가 범위 내
- 방과후 보육료: 정부지원어린이집 10만원
- 시간연장 보육료: 시간당 3,000원 등 입소우선순위 준수해야 함

#### - 보육료 결정

- 어린이집 원장이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

## (참고 3) 아이돌봄 사업(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법 '15.12,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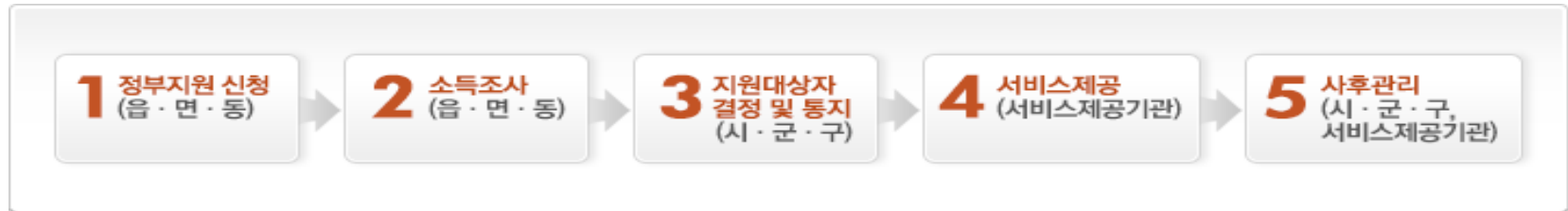
### ● 아이돌봄 사업 개요

#### ○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서비스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
-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 - 정부지원가구(종일제 및 시간제 가·나·다형) 신청절차



\* 중위소득기준: 가형 60%(2,635천원), 나형 85%(3,733천원), 다형 120%(5,270천원), 라형 그 이상

\* 정부지원율(시간제 기준): 가형 75%, 나형 45%, 다형 25%, 라형 0%

##### - 정부미지원(본인부담)가구 신청절차

- 정부미지원가구(시간제 라형)는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 (참고 3) 아이돌봄 사업

###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됨

#### ○ 기본 단가 : 6,500원/1시간

#### ○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제(6,500원/1시간), 종합형(8,450원/1시간)

- 영아종일제(6,500원/1시간), 보육교사형(7,800원/1시간)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및 휴일 이용시, 시간당 3,250원 추가

#### ○ 아동 추가 : 기본 단가에 할인을 적용

\* 돌봄 아동 2명 신청 시 총 금액의 25% 할인, 3명 신청 시 총 금액의 33.3% 할인

## (참고 3) 아이돌봄 사업

###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 가구, 명)

구분	이용가구 계	시간제	영아종일제
'15년	57,687	52,354	5,333

#### - 시간제 지원유형별 이용실적(이용 가구수)

(단위 : 가구, %)

구분		이용가 구합계	지원가구 합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50~70%	70~100%	100%초과
'15년	누계	52,354	31,517	20,154	6,306	5,057	20,837
	비율	100	60.2	38.5	12.0	9.7	39.8

#### - 영아종일제 지원유형별 이용실적(이용 가구수)

(단위 : 가구, %)

구분		이용가구 합계	지원가구 합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50~70%	70~100%	100%초과
'15년	누계	5,333	5,333	1,179	843	1,244	2,067
	비율	100	100	22.1	15.8	23.3	38.8

## (참고 3) 아이돌봄 사업

### ● 아이돌봄 운용상의 과제

#### 1.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다양한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확대

- 가사활동 서비스와 연계: 종일제 이용시 서비스 한정(가사활동 등 제외)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낮은 수당으로 진입률 저조 → 전문적 돌봄 프로그램 필요

#### 2. 수요자 맞춤형 돌봄 실현을 위한 우수한 아이돌보미 양성

- 교육시 위생관리 및 응급상황시 대처법 등 이용자 불만사례 많은 부분에 중점 교육

#### 3. 가정 내 올바른 돌봄 문화의 정착 및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

- 서비스 범위 명확화로 이용자-돌보미 간 분쟁 방지 및 올바른 돌봄 문화의 정착 지원
- 올바른 돌봄 활동을 위한 가이드북 제공 →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종사자는 민원처리 등 부담 크고 처우가 낮아 이직률이 높음



## Ⅱ . 대응 정부정책(사회복지 정책)

### ● 주요 복지제도 도입 현황

사회안전망	주요제도	시행
1차안전망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77년 시행, '89년 전국민 확대
	산재보험	'64년 시행, '00년 1인 이상 사업장 확대
	국민연금	'88년 시행, '99년 전국민 확대
	고용보험	'95년 시행, '98년 1인 이상 사업장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08년 시행
2차안전망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노인/ 장애인 돌봄 서비스 등	- 06년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도입 - '11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시행 - 영유아보육료 지원('13년 전 계층 확대)
3차안전망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00년 시행('61년 생활보호법 개정)
	의료급여	'77년 시행, '00년 확대 개편
	긴급복지지원	'06년 시행
	기초노령연금	'08년 시행, '14년 기초연금으로 전환
	장애인연금	'10년 시행

## Ⅱ . 대응 정부정책(사회복지 정책)

### ● 주요 복지사업의 내용과 보조율

#### -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장제, 해산 급여 및 긴급복지, 자활사업
- 국고보조율 서울 50%, 지방 80%

#### - 노인복지제도

- 65세 이상 기초연금 시행(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 노인일자리, 요양시설 확충
- 국고보조율 80% (재정력에 따라 40%-90%)

#### -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 등

- 0-5세 보육료 및 양육수당지급, 보육돌봄서비스, 아이돌봄지원
- 국고보조율 서울 35%, 지방 65%

#### - 장애인지원제도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2010년 도입, 현재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운영), 장애수당
- 국고보조율 서울 50%, 지방 70%

### Ⅲ. 지방재정예의 영향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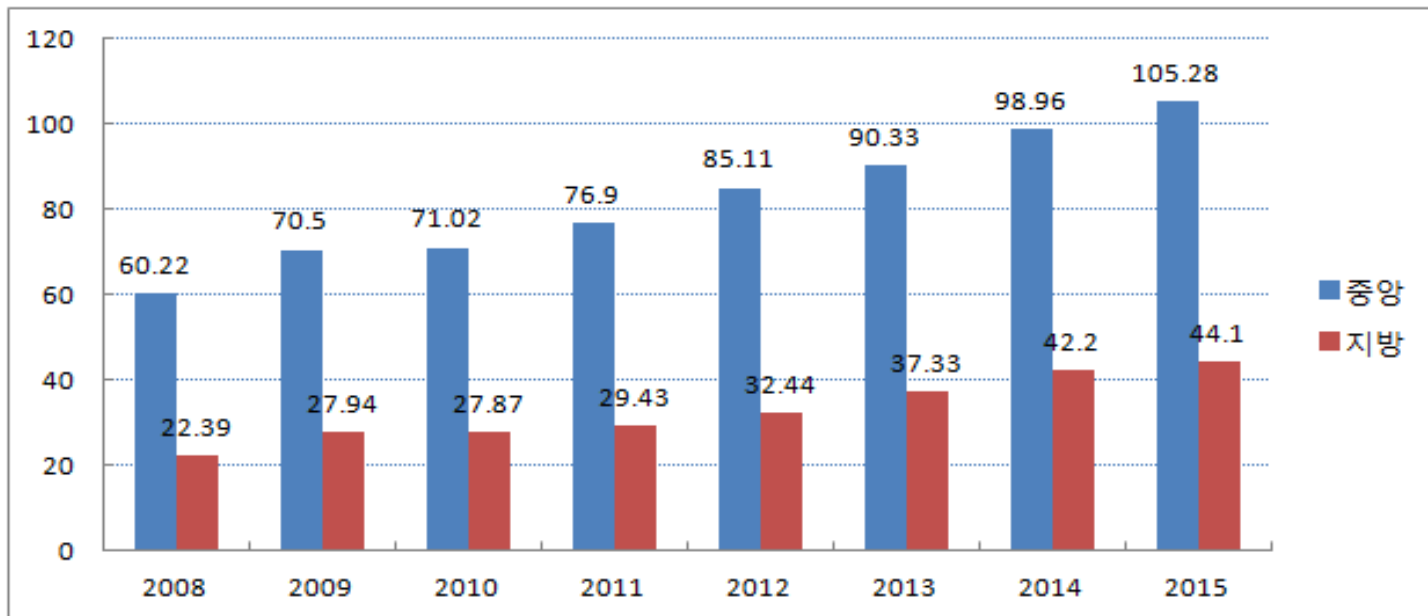
#### ●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증가 실태

- '15년 기준 중앙 105.3조원, 지방 44.1조원

- '08년 기준 중앙 연평균 8.5% 증가, 지방 10.4% 증가
- 영유아보육료 지원('12년 이후), 기초연금 시행('14년) 등으로 지방의 복지지출 증가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비 증가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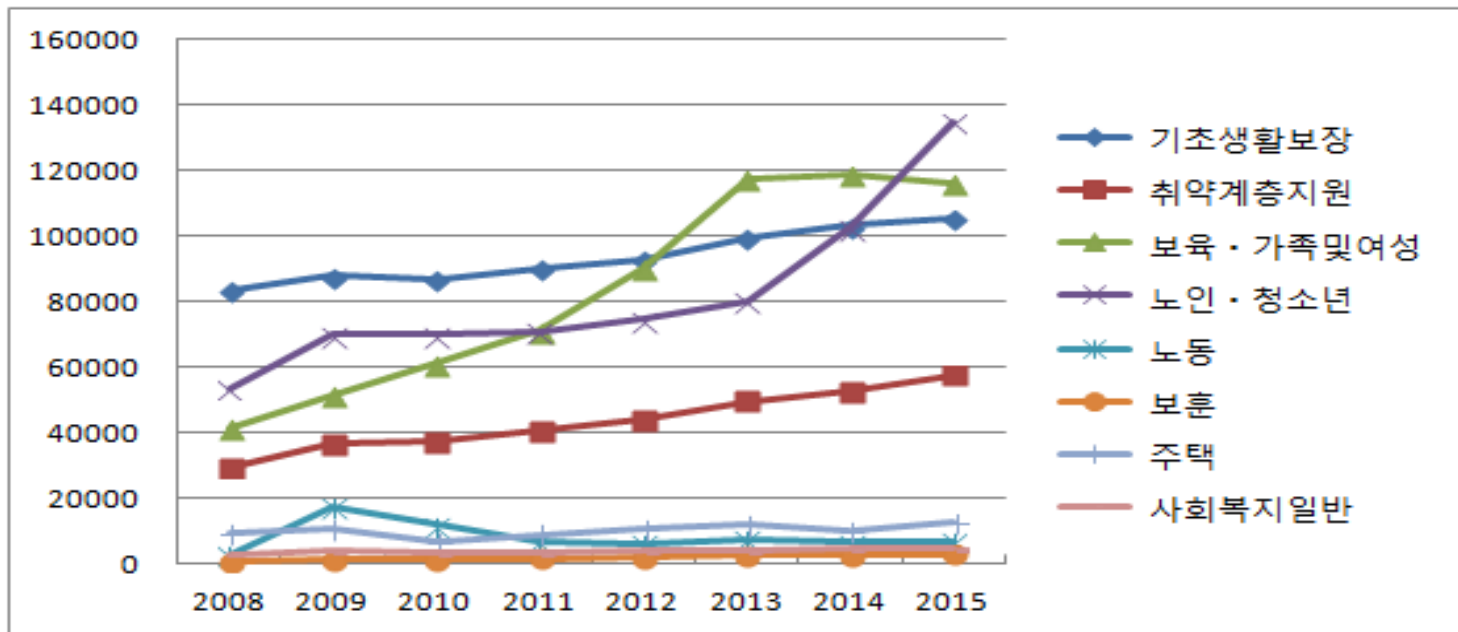
### Ⅲ . 지방재정예의 영향과 전망

####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 증가 실태

- '15년 기준 지방 세출 총액의 25.4%('08년 19.5%)
- '08년 대비 '15년에 21.7조원 증가
  - 노인 관련 8.1조원, 보육 관련 7.5조원 증가, 이들이 사회복지비 지출을 주도함

지방 사회복지 부문별 지출 증가추이

(단위: 억원)



### Ⅲ . 지방재정에의 영향과 전망

#### ● 유형별 사회복지지출 비중

- 특별시 및 광역시 31% 수준, 도 32%, 시 27%, 군 20%, 자치구 54%
- 광주광역시 복구 70% 초과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비 부담압력이 매우 큼
  - \* 지방 SOC투자, 지역개발 부문 지출 감소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단위: %)

	전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2008	17.3	20	19.5		25.3	14.9	16.7	14.3	37.1
2012	20.5	25.7	24.7		26.1	17.6	20.7	15.6	44
2015	25.4	31.3	31.6	18.6	32.2	18.9	26.8	19.5	53.5
	최고	31.3	36.2	18.6	37.2	18.9	38.9	30.2	70.1

## Ⅲ . 지방재정에의 영향과 전망

### ● 향후 전망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더욱 증가 전망

#### - 대책

- 저성장 시대 세입의 한계에 직면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
- 중앙재원 이전으로 지방교부세 확대, 국고보조율 인상, 세원이양(지방요구)
- 국고보조사업 정비, 누수 방지, 감면 축소, 기존 지방재정제도 조정(시행 중)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구조조정, 세입확보노력 등 자구노력 등.

감사합니다